

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3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11. 1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11. 26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)

가. 개정이유
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2)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,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(현행) 부칙 제4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→ (개정) 삭제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 -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982(2025. 9. 10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-52호

- 예고기간: 2025. 9. 10.~2025. 10. 1.(21일간)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○ 개정이유

- 현행 「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·운영 조례」부칙 제4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
- 그러나 「지방공기업법」제13조에 의거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존속기한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므로,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현행 부칙 제4조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의 조항 제4조(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삭제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,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,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「지방공기업」제13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를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로 설치·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삭제는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1. 2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